



공지사항

워싱턴 주 세무부

2010년 6월 11일

일시적 탄산음료 과세 대상 소매업자

요약 2차 대안 상원 법안(2ESSB) 6143, 섹션 1401-1406, 탄산음료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12 온스 당 \$.02의 탄산음료 세금이 일시적으로 부과됩니다.

배경 워싱턴 주는 도매 및 소매로 판매되는 탄산음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제한된 면제와 함께 탄산음료 세금은 워싱턴 주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탄산음료 제조업자, 배급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와 같은 모든 관련 업자에 적용됩니다. 탄산음료 세금은 현재 도매 및 소매 판매세 및 사업세와 같이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다른 세금에 추가된 것입니다.

소매세와 달리 탄산음료 세금은 소비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일 탄산음료 판매업자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모든 판매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속 판매 면제 2가지 면제 조건 중 하나에 적용되지 않는 한 탄산음료를 이 주에서 판매할 경우 소매업자는 탄산음료 세금을 내야합니다. 소매업자에 의한 탄산음료 판매는 그 판매가 다음과 같이 연속적인 탄산음료의 판매일 경우에만 면제가 됩니다.

- 탄산음료 제조업자나 배급업자가 탄산음료를 워싱턴 주에서 판매했을 당시 사전에 이미 탄산음료 세금 대상이 된 경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세금이 부과된 탄산음료”라고 언급됩니다. 또는,
- 해당 제품이 탄산음료 제조업자에 대해 한정된 면제 하에서 면제가 되어 세금이 면제된 경우. 이것은 일반적으로 “탄산음료 제조업자에 대한 면제”로 언급되며 탄산음료 제조업자의 판매에 대한 첫 \$1,000만불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소매업자의 예는 캔, 병 또는 기타 유사한 밀폐 용기로 포장된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식료품점, 편의점, 일반 상품 할인점, 음식점, 바 및 술집, 자판기 사업자 및 기타 소매업자를 포함합니다.

면제 판매 문서화 사전에 세금이 부과된 탄산음료의 연속 판매에 대한 면제나 탄산음료 제조업자-면제 탄산음료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는 소매업자는 그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P.O. BOX 47478 | OLYMPIA, WASHINGTON 98504-7478 | 1-800-647-7706 | [HTTP://DOR.WA.GOV](http://DOR.WA.GOV)

시각장애자를 위하여 이 문서가 다른 대안 형태로 이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시려면 (360) 705-6715로 전화해 주십시오. 텔레타이프(TTY) 사용자는 1-800-451-7985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전 판매인으로부터 받은 문서는 다음 형태일 수 있습니다.

- 송장에 확인된 탄산음료가 이전 탄산음료 세금의 대상이었거나 탄산음료 제조업자의 면제 하에 세금이 면제되었음을 명시하는 각 판매 송장에 인쇄된 정보.
- 특정 판매 송장 하에 판매된 탄산음료가 이전에 탄산음료 세금의 대상이 되었거나 탄산음료 제조업자의 면제 하에 세금이 면제되었음을 명시하는 별도의 증명서.

세무부는 소매업자가 면제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위에 설명된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탄산음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소매업자는 해당 문서를 최소 5년 동안(금년과 이전 4년) 유지해야 합니다.

2010년 7월 1일 이전에 획득한 탄산음료

2010년 7월 1일 이전에 탄산음료를 획득하고 이러한 음료를 7월 1일 이후에 판매한 소매업자는 이들 음료에 대해 탄산음료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 타코마 편의점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합니다. 6월 20일에 그 가게는 탄산음료 물품을 받았습니다. 7월 1일까지 이 물품 중 반이 팔리지 않고 가게의 재고로 남았습니다. 소매업자는 7월 1일 이전에 받은 물품 중에서 2010년 7월 1일 이후에 판매한 음료에 대해 탄산음료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제조업자의 면제 또는 사전 세금이 부과된 탄산음료 면제에 해당되는 제품의 판매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월 1일 이전에 획득한 음료에 대한 개별적인 판매를 추적하는 대신, 그 날짜 이후에 판매된 음료를 추적하여 소매업자는 7월 1일에 재고로 남아 있는 모든 탄산음료의 목록을 만들 수 있으며 소매업자의 할당된 보고 빈도에 따라 2010년 7월, 2010년 3/4 분기 또는 연간 2010년 물품세 신고에서 탄산음료 세금을 보고합니다.

2010년 7월 1일 이후에 획득한 탄산음료

2010년 7월 1일 이후 탄산음료 제조업자 또는 배급업자로부터 소매업자가 구매한 대부분의 탄산음료는 사전 세금이 부과된 탄산음료의 연속 판매 또는 탄산음료 제조업자의 면제에 대해 자격이 있는 음료의 연속적인 판매로서 면제에 대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상황 하에, 탄산음료 세금은 이러한 음료의 소매업자의 판매에 대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매업자는 위에서 설명되어 있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공급업체로부터 획득한 탄산음료일 경우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 엘렌스버그의 술집은 20온스 병에 포장된 탄산음료를 판매합니다. 이 술집은 야키마 배급업자로부터 매월 탄산음료를 배달 받습니다. 판매 송장은 탄산음료 세금이 사전 지불되었고 지불된 세금의 금액 모두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에 대한 술집의 판매는 사전 세금이 부과된 음료에 대한 연속적인 판매이며 술집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 시애틀의 식료품점은 탄산음료를 판매합니다. 식료품점은 워싱턴 탄산음료 제조업자로부터 음료를 구매한 벨뷰 배급업자에게 탄산음료를 매주 배달 받습니다. 배급업자에 대한 탄산음료 제조업자의 판매 송장에는 탄산음료 제조업자의 면제 하에 탄산음료가 탄산음료 세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을 포함합니다. 식료품점에 대한 배급업자의 판매 송장에는 동일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탄산음료에 대한 식료품점의 판매는 탄산음료 제조업자 면제 음료에 대한 연속적인 판매이며 그 식료품점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 화이트 샐몬 델리는 12 온스 캔으로 포장된 탄산음료를 판매합니다. 6월 30일 이후 매월 델리는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 있는 공급업자로부터 탄산음료와 기타 식료품을 구입합니다. 공급업자의 판매 송장에는 탄산음료 세금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델리는 탄산음료 제조업자 면제나 사전 세금이 부과된 탄산음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탄산음료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 여러 주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남서 워싱턴에 위치한 상점들을 포함한 지역 상점에 배급을 위해 오리건주 그레샴시에 있는 도매점에서 탄산음료 물품을 받습니다. 탄산음료 공급업자로부터 소매업자에 대한 판매 송장에는 탄산음료 세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소매업자는 탄산음료 제조업자의 면제나 사전 과세된 탄산음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매업자의 워싱턴 지역에서 이루어진 탄산음료의 판매에 대해 탄산음료 세금이 부과됩니다.

탄산음료 세금 보고

탄산음료 세금은 물품세 신고로 보고합니다. 과세 대상 탄산음료 판매를 보고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줄이 “V. Other Taxes(기타 세금)” 하에 납세 신고서의 2페이지에 표시될 것입니다.

Line No. (줄 넘버) 58	탄산음료 세금	코드 136	과세해야 할 수(판매된 동등한 비면제 케이스)	수량	요율 .48	납부할 세금
-----------------------	---------	--------	---------------------------	----	--------	--------

세금은 24개의 12온스와 동일한 “동등한 케이스” 기준으로 보고됩니다. 따라서 28 액량 온스의 탄산음료는 동등한 한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다양한 용기의 크기를 동등한 케이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워크시트를 7월 1일부터 dor.wa.gov/carbonatedbeverages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수단으로 탄산가스와 다음 물질을 포함한 인간의 섭취를 위해 의도된 포장된 무알코올 음료입니다.

- 카페인
- 추출물
- 과일 주스 또는 농축 과일 주스
- 허브
- 스위트너
- 시럽(설탕 또는 설탕 대용물을 포함한 액상 또는 가루 형태의 농축된 혼합물)

탄산음료는 캔, 병 또는 다른 유사한 밀폐 용기에 포장됩니다.

탄산음료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소매업자에 의해 혼합되어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 판매되는 파운틴 음료
- 탄산이 든 생수. 생수에 대한 정보는 판매세 과세 대상 생수라는 제목의 세무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

변경되지 않은 판매세

탄산음료 세금은 탄산음료 판매에 대한 소매 판매세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0% 이하의 과일이나 야채를 함유한 가당 탄산음료의 소매 판매는 판매세 대상으로 남아 있는 청량음료입니다. (RCW 82.08.0293 참고.)

**변경되지 않은
B&O 세금**

탄산음료 세금은 탄산음료 판매에 대한 B&O 세금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탄산음료의 소매 판매는 이러한 판매로부터 매출의 총 수익에 의해 측정된 소매업 B&O 세금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RCW 82.04.250 and 82.04.070 참조.)

자세한 정보

새로운 탄산음료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부 웹사이트 dor.wa.gov/carbonatedbeverages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질문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해 본 웹사이트를 자주 확인해 주십시오. communications@dor.wa.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세무부 전화 정보센터에 1-800-647-7706으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